

TIPLONews 한국어본

2020 년 8 월호(K252)

K200714Y1

01 Everlight 가 한국의 서울반도체의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대만의 Everlight¹⁾ 및 Epileds²⁾는 특허 소송에 관한 전략적 연맹을 맺고 2018 년 3 월 14 일 독일 연방 특허 법원에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한국의 서울반도체가 갖고 있는 유럽 특허 EP1697983 호 (독일 특허 DE60341314.5 호)의 모든 청구항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Everlight 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질화갈륨(GaN)계 LED 의 질소면 표면상 구조물 기술에 관한 것이었고 2020 년 7 월 2 일 독일 연방 특허 법원은 유럽 특허 EP1697983 의 모든 청구항을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2020.07)

역주:

- 1) 중국어명 億光電子工業股份有限公司 영어명 Everlight Electronics Co., Ltd.
- 2) 중국어명 光鋇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명 Epileds Technologies, Lnc.

K200710Y3

02 TV 프로그램을 불법 리핑한 남자에게 징역 1 년 및 대만화폐 1300 만원의 손해 배상 지불 명령 판결

왕씨 성을 가진 남성은 2015 년 중국의 디지털 범죄 그룹과 손 잡고 영리를 목적으로 대만에 기계를 제어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민시(民視) 등 방송사 13 개 프로그램의 신호를 추출하여 상기 그룹이 설치한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하고 다시 불법 디지털 셋톱 박스 (STB) 업체에 전달하여 이익을 추구했다. 신북(新北) 지방 법원은 심리한 결과, 저작권 위반으로

왕씨에게 징역 1 년에 처하고 다른 각각의 방송국에게 대만화폐 100 만원씩, 총 1300 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건은 상소 할 수있다.

판결문은 2015 년에 왕씨가 상기 그룹의 자칭 하강령(何康寧)이라고 하는 중국 국적의 사람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매월 대만화폐 3 만 ~ 7 만원의 보수를 받는 대신, 대만에 기계 설비를 설치하여 방송신호 소스를 추출, 저장하고, 이를 데이터로 변환을 한 후 해당 그룹이 가설한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전송받은 데이터는 불법 디지털 STB 업체에 다시 전송하고 이를 바탕으로 STB 를 임대 또는 구입한 소비자가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민시(民視) 등의 방송국 13 개사는 2017 년 시장에서 해당 프로그램 시청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있다고 선전하는「안박 (安博) 제 3 세대 블루투스 지능형 셋톱박스」(UBOX3 블루투스 버전) 를 발견하고 이를 제보했다. 검찰 및 경찰은 2018 년 수사에 착수하여 서버, 디코더, 라우터, 부스터, STB 등을 압수했다.

법원은 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떠한 이용 허락도 받지 않고 악의로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신호를 추출하였으며 그 범죄 수익은 대만화폐 100 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룹의 이익은 그보다 훨씬 크고, 침해된 저작물의 건수도 많은 점등을 참작하여 징역 1 년에 처하는 판결과 각각의 업자에게 대만화폐 100 만원씩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0.07)

K200803Y6

03 상업 사건 심리 법률, 지적재산권 및 상업 법원 조직법을 2021 년 7 월 1 일부터 시행

사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20 년 1 월 15 일에 공표된 상업 사건 심리 법률, 지적 재산권 및 상업 법원 조직법의 각각 제

81 조, 제 45 조에서 사법 법원에 시행일을 정하도록 위임하고있다.

사법부는 해당법률이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이며, 전문 법원의 설치, 변호사 강제 대리 하이테크 심판의 채용, 상업 중재 절차 당사자에 의한 조회 제도, 전문가 증인 및 비밀 유지 명령의 도입에 관련된 점에 감안하여 관련 자원과 제도를 통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각계의 조기 시행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 시행하도록 공고하였다. (2020.08)

K200708Y8

K200708Z8

04 대만 체코간 조세 협정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작

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대만과 체코와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대만 체코 조세 협정 ")은 2017년 12월 12일에 체결된 이후 양측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개시를 예정으로 하는 취지의 상호 통지를 완료하고 2020년 5월 12일에 발효되었다. 이것은 대만에게 33번째 (유럽 국가내에서는 16번째 EU 회원국으로는 13번째)의 포괄적 조세 협정이 된다. 이 협정에 따라 국경을 넘은 무역과 투자 장벽을 완화하고 쌍방의 무역 투자 왕래 기업간 협력 및 기술 교류에 보다 나은 조세 환경을 제공할 수있게 되었다.

대만 체코 조세 협정은 총 29조 조문으로 구성되어 주로 조세원천 납세국가 (예로 체코)는 그 협정 체결국 (예로 대만) 거주자 (개인 및 기업을 포함)가 취득한 각종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과세 감면 조치를 제공하고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아울러 분쟁 해결의 제도를 제공하여 이중과세 관련 문제를 예방 또는 제거토록 한다.

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있다. 체코는 EU 회원국이며, 유럽의 중심부로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사회 인프라 또한 잘 갖추어져

있다. 경제부의 2020년 5월말 현재 통계에 따르면, 체코는 대만의 유럽 투자처로서 네덜란드, 영국, 룩셈부르크,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 이어 7번째 규모를 갖는 투자처이며, 대표적인 IT 기업이 현지에 공장을 설치하고, 대만 기업이 유럽 시장을 진출하는 중요한 거점이 되고있다.

대만 체코 조세 협정이 발효한 후, 대만 기업의 체코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만약 협정의 규정에 부합한다면, 대만 기업이 체코 기업에 투자해 얻은 주식배당은 체코의 세율 35%에서 10%로 완화된다. 대만 기업이 산업 또는 과학적 장비를 체코 기업에 대출 할때 임대료는 체코에서의 세율 35%에서 5%로 경감된다.

대만 기업이 체코 기업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은 그 대만 기업이 체코에 고정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임의의 12개월 가운데 인원을 체코 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이 총 9개월 미만인 경우, 체코의 세율이 35%에서 제로로 감소된다.

아울러, 대만 체코 조세 협정은 쌍방의 거주자에 대하여 평등하고 호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체코 기업이 대만에서 유사한 운영 방식을 채용한 경우도 대만에서 동일한 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되어, 체코 기업이 대만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을 진출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아져 양측은 경제, 무역, 투자 측면에서 협력의 기회를 더 얻게된다. (2020.07)